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7년 11월 10일

나. 회부일자 : 1997년 11월 11일

3. 제안이유

-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환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97년 10월 1일자로 지방세 법령에 신설됨에 따라
- 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등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적부심사위원회 구성규정 신설
  - 위원의 임기(2년) 및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
  - 공무원이 아닌자의 수당등 지급
  -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규칙에 정함.

## 5. 검토의견

충청북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세법이 1997년 8월 3일 법률 제5406호로 개정 공포되어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도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사전적 구제제도인 적부심사위원회를 두어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토록 하였으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회원출석시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 부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